

[별지 제40호서식] <신설 1974.12.31>

지 정 원 천 정 수 의 무 자 지 정 서				
납 세 자	①영업자납세번호		②납세번호	
	③주 소 (법 인 은 본 점 소 재 지)			
	④영업장소재지			
	⑤상 호		⑩전화번호	
	⑥성 명 (법인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법인대표자)	
	⑧영 업 명	업	⑨종 목	
지 정 사 항				
귀하를 영업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합니다. 19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206-02-76A

74.12.2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지정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안내

귀하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되었으니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 대상 및 세목

제품·상품 또는 광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에 불구하고(외상도 포함) 거래상대방인 영업자의 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징수할 세액의 계산

물품대금 또는 가공료에 대하여 거래상대자의 영업명에 따른 영업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납부절차

원천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표준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소정의 원천징수액계산서·원천징수명세서와 표준계산서 1매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할 세액에 5%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5. 원천징수의무 게시일

이 지정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에 거래된 분부터 지정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